

1. 개정이유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등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과 선임 기준,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가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사안전감독 결과에 따른 중대결함에 대한 공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 등 규정(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별표 11의2, 별표 11의3)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선임기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나. 과징금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 규정(안 제42조의2, 별표 13의3)

정부대행기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함

다. 해사안전감독 중대결함 정보 공표(안 제51조)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항행정치 처분을 받은 선박의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53조의4, 별표 8)

선박안전관리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규정함

마. 해상교통안전대행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7)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기술 인력의 경력기준 등을 확대하여 규정함

바. 선박출항통제 기준 보완(안 별표10)

「어선안전조업법」에 어선의 출항제한 기준 등을 규정함에 따라 선박 출항통제 기준에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은 제외토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 등) ① 법 제46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3조의3(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46조의3제8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11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교육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48조제7항”을 “법 제48조제8항”으로 한다.

제42조 중 “법 제48조제9항”을 “법 제48조제10항”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법 제48조 제10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금액 등은 별표 13의3과 같다.

제4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를 분실·훼손하거나 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1. 증서 원본(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

제4장에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8호 서식과 같다.

- ② 영 제20조의4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의4와 같다.

제53조의3(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① 영 제20조의4제6항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자격증의 분실·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발급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의4(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6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8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등: 2024년 1월 5일

별표 7 제1호 비고 3)을 2)로 하고, 비고 2)를 3)으로 하며, 같은 3)(중전의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책임급 연구원의 경우 2호의 대체자격으로만 안전진단대행업자를 등록할 경우에는 선임급 연구원의 과반수 이상은 기본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2종 대행업자로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2종 대행업자 등록 후 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한 후에는 1종 대행업자로 변경등록할 수 있다.

별표 7 제2호가목의 책임자급 인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책임자급 인력	1) 기본자격: 선임자급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2) 대체자격: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사안전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

별표 7 제2호가목의 선임자급 인력의 자격요건란 1) 중 “소지자”를 “소지자 또는 보조자급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고, 같은 란 가) 중 “검토업무”를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로 하며, 같은 란 나) 중 “검토업무”를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로 하고, 같은 란 다) 중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사안전관련 공공기관 또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6년 이상”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6년 이상”으로, “검토업무”를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의 보조자급 인력의 자격요건란 나) 중 “검토업무”를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로 하며, 같은 란 다) 중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사안전관련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3년 이상”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3년 이상”으로, “검토업무”를 “검토업무 또는 해사안전 관련 업무”로 하고, 가목 비고 3)을 4)로 하며, 같은 비고에 3)과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해사안전 관련 업무는 선박항해학 분야, 선박운용학 분야, 선박운항학 분야, 해상교통공학 분야, 조선해양공학 분야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학위 소지자로서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그 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강의한 사항을 말한다.

5) 대체자격자 및 보조자급 기술인력은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9조의2, 제19조, 제42조 및 제48조 관련)”을
“(제9조의2, 제19조, 제42조, 제48조 및 제53조의4 관련)”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법 제48조제6항 제3호	지정취소			
---------------------------------------	---------------------	------	--	--	--

별표 8 제2호다목5) 중 “법 제48조제7항”을 “법 제4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61조의5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제6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1조의5 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제61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게 된 경우	법 제61조의5 제1항제3호	자격취소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1조의5 제1항제4호	자격정지 (180일)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법 제61조의5 제1항제5호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별표 10 제2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를

삭제한다.

4)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별표 11 제1호다목1) 중 “영 제16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으로 하고, 제2호다목1) 중 “영 제16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으로 하며, 제3호다목1) 중 “영 제16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으로 한다.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별표 13의3 및 별표 13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42조의2,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제58조제11호의2, 별표 8 제목, 별표 8 제2호마목, 별표 11 제1호다목1), 별표 11 제2호다목1), 별표 11 제3호다목1),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별표 13의4,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의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제33조의2 관련)

구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하 “외항선 “이라 한다)의 사업장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이하 “내항선 “이라 한다)의 사업장
자격 기준	안전관리 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선박안전관리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에 12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선박안전관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선박안전관리사 3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에 6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안전관리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1) 선박안전관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선박안전관리사 3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에 6년 이상 선박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선박안전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인원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안전관리 자	4척 이하: 2척당 1명 이상	8척 이하: 4척당 1명 이상
		5척 이상: 3척당 1명 이상	9척 이상 15척 이하: 5척당 1명 이상
			16척 이상: 6척당 1명 이상

비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2. 하나의 사업장에 외항선과 내항선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안전관리책임자: 외항선의 기준을 적용한다.
 - 나. 안전관리자: 내항선 및 외항선의 자격기준 및 인원을 각각 적용한다.
3. 사업장 소속선박이 1척(내항선은 2척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 11의3]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제33조의3 관련)

1. 교육 내용

구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사업장 소속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사업장 소속
교육내용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 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5. 해양사고 및 중대재해 관리	1. 안전관리체제 수립·운영 관련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해운·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해상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5. 해양사고 및 중대재해 관리

2. 교육 시간

구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사업장 소속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사업장 소속
교육시간	안전관리책임자	16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14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3. 교육 시기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년 마다

비고

1. 신규교육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신규교육이나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
2. 정기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종전의 정기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종전 정기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의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3의3]

정부대행기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42조의2 관련)

1. 적용기준

- 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법 제48조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다. 과징금의 부과는 처분 전년도 1년간 인증심사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에 관한 대행업무를 통한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과징금 부과권자가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 분기별 또는 월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인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산출방법

정부대행기관의 처분 전년도 1년간 매출금액 ÷ 12 × 영업정지 개월수
× 위반행위별 부과기준

3. 세부산출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부과 기준
가.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법 제48조제6항제4호	100분의 5
나. 법 제48조제8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6항제5호	100분의 3

[별표 13의4]

수수료(제53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금 액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응시	선박안전관리사 1급 및 2급	1만 5천원
	선박안전관리사 3급	1만 4천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무료

* 비 고

1급이나 2급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선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 구분		[]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선임자	자격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선임 [] 변경선임	연월일	년 월 일	사유(변경선임의 경우)	
직무 범위	관리선박				
	선박소유자				
	기타				
안전관리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변경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선박안전관리사자격증 2. 선박안전관리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지방해양수산청
장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지방해양수산청
장

→

결 재
지방해양수산청
장

→

통보
지방해양수산청
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안전관리책임자 등 교육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회사명	소속회사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구분 []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선임일		

「해사안전법」 제4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선박안전관리증서
[] 안전관리적합증서
[]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회사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선 박	선명		총톤수		
	선박번호		용도		
	선박 식별번호(IMO No.)		선적항		

신청하려는 증서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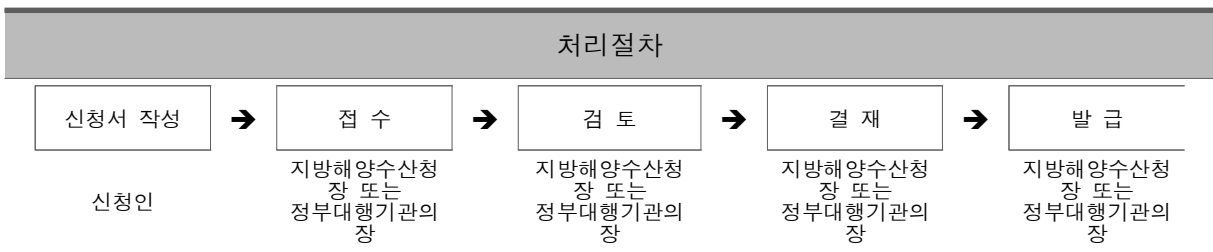
증서의 종류	기존 증서번호	재발급 신청 사유	⑯ 비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라 증서의 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1. 증서 원본(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선박안전관리사시험 응시원서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응 시 번 호	응시자격구분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험 면 제 해 당 사 유				
면 제 과 목				⑧확인자 (인)

「해사안전법」 제6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000장 귀하

수수료

(자르는 선)

응 시 표

응 시 번 호	응시자격구분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 제 과 목					
시 험 일 시	20	년	월	일부터	시험장소
	까지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 발급
[]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한글)	성명(영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시험	자격증 번호(재발급의 경우에만 작성)		
	시험합격 연도		
	시험 회차		
	자격 취득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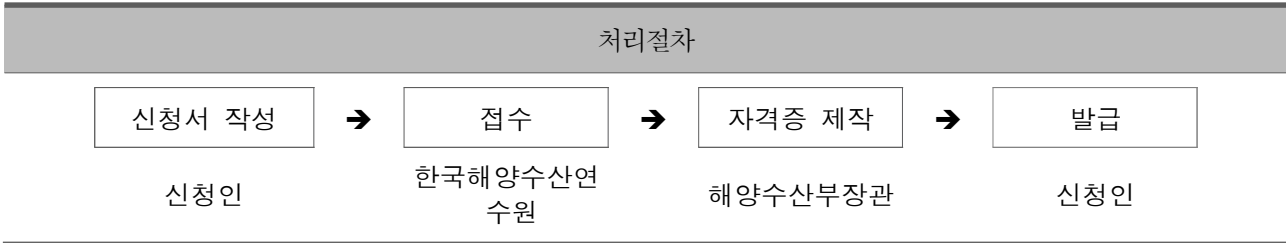
「해사안전법」 제6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정면 상반신(3.5cm×4.5cm) 사진 2장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성 명:

생 년 월 일:

자격취득연월일:

사진
(3.5cm×4.5cm)

위 사람은 「해사안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년도에 시행한 제 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3조(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 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은 별표 11에 따른다.</u> <u><신 설></u> <u><신 설></u>	<u>제33조(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u> <u>제33조의2(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 등) ① 법 제46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u> <u>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u> <u>제33조의3(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46조의3제8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11의3과 같다.</u> <u>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강의,</u>

	<u>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교육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제41조(정부대행업무의 보고) ①	제41조(정부대행업무의 보고) ①
정부대행기관은 <u>법 제48조제7항에</u>	----- <u>법 제48조제8항-</u>
따라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	-----
이내에 인증심사 대행업무의	-----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보고 <u>하여야</u> 한다.	보고 <u>해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	제42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u>법 제48조제9항에</u>	처분 기준) <u>법 제48조제10항--</u>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	-----
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u><신 설></u>	<u>제42조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u>
	<u>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u>
	<u>법 제48조제10항에 따라 과징금을</u>
	<u>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u>
	<u>등에 따른 과징금 금액 등은</u>
	<u>별표 13의3과 같다.</u>
제43조(증서) ① ~ ③ (생략)	제43조(증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를</u>
	<u>분실·훼손하거나 증서 기재</u>

제51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등) ① 법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신설>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선박안전관리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1. 증서 원본(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1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항행 정지명령을 받은 선박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시험 응시원서 (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신 설>

<신 설>

제5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② 영 제20조의4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의4와 같다.

제53조의3(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① 영 제20조의4제6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자격증의 분실·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발급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의4(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6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8조(규제의 재검토) -----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2. 삭제 3. ~ 11. (생략) <u><신설></u> 12. ~ 13. (생략)	----- ----- ----- --. 3. ~ 11. (현행과 같음) <u>11의2.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u> <u>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u> <u>자격기준 등: 2024년 1월 5일</u> 12. ~ 13. (현행과 같음)
--	---